

제278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3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3월 4일
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10
- 나. 제 출 자: 송순호 의원 외 6명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2월 1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2월 25일

2. 개정이유

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관내 약국을 통한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관할구역 관련 규정을 삭제함. (안 제3조)
- 나. 폐의약품의 수거 장소를 명확히 하고 동 주민센터를 추가함.
(안 제4조)
 - 폐의약품 수거 장소

- 구 소재 약국 (안 제4조제1호)
- 구 보건소 (안 제4조제2호)
- 동 주민센터 (안 제4조제3호)

다.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폐의약품의 수거주기와 처리방법을 명시함. (안 제5조)

- 보건소: 불용의약품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관리 총괄
- 구 약사회: 불용의약품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협조
- 자원순환과: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수거·운반·처리

※ 단서조항으로 수거시기와 횟수를 발생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.

라. 기존의 포상관련 규정을 표창으로 개정함. (안 제6조)

마.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과 조례형식에 맞게 개정 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4,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

나. 예산조치: 불용의약품 수거함 및 홍보비 기 편성

다. 해당부서: 의약과, 자원순환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2. 19. ~ 2. 24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폐의약품의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
-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대한약사회 등과 민·관 협약을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,
 - 우리구 역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27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음.
 - 폐의약품은 2017년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‘생활계 유해폐기물’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주민들의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¹⁾ 토양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어왔음.
- 이에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가 있었으며,
 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「약사법」 및 「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지침」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와
 - 시·군·구 폐의약품 등 관리조례에 구체적인 수거장소와 수거횟수 등을 명시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.
- 본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하여 폐의약품 수거 장소와 수거 횟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

1) 남은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 결과 쓰레기통·하수구에 배출한다고 응답한 건수 55.2% (국민건강심사평가원, 2018년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)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 관할구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4조(중전의 제5조) 구민의 책무에서 구체적인 장소 없이 “수거용기”에 분라배출 하도록 한 것을 “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수거용기”로 구체화 하고 각 호에 폐의약품 수거장소로
 - 구 소재 약국
 - 구 보건소
 - 동 주민센터를 명시하였고,
- 특히 기존에 구 소재 약국과 보건소에서 수거하던 것에서 폐의약품 배출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추가하였으며,
- 안 제5조(중전의 제6조)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하여
 -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총괄
 - 구 약사회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회수에 협조
 - 폐기물관리 부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수거·운반·처리하도록 하였고,
 - 안 제5조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폐의약품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(중전의 제7조)에서는 기존의 포상관련 규정을 보다 그 근거가 명확한 표창으로 개정하였고, 그 밖에 띄어쓰기, 마침표, 약칭의 표시 등을 어문규범 및 조례의 형식에 맞게 개정하였음.

- 본 개정안은 가정 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
구민건강 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 - 수거용기 설치장소 명시 및 동 주민센터 추가
 -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한 보건소, 구 약사회, 폐기물 관리부서 간 역할 분담
 - 폐의약품 수거 횟수 및 수거 방법 등을 구체화 등
-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
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,
-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구 약사회와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대적
인 주민홍보를 통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수거·처리가
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제정과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
해야 할 것임.

참고**폐의약품 처리실태****□ 폐의약품 수거 참여 약국 현황**

시도명	대상 약국 수	사업 참여 약국 수	참여율
서울	5,106	4,481	87.8%
부산	1,531	1,531	100.0%
인천	1,082	1,071	99.0%
대구	1,292	1,222	94.6%
광주	674	674	100.0%
대전	765	639	83.5%
울산	410	343	83.7%
경기	4,519	4,069	90.0%
강원	663	638	96.2%
충남	952	844	88.7%
충북	659	574	87.1%
전남	797	795	99.7%
전북	904	761	84.2%
경남	1,271	1,265	99.5%
경북	1,174	1,174	100.0%
제주	287	279	97.2%
세종	125	118	94.4%
계	22,211	20,478	92.2%

(‘19.11월, 권익위 실태조사)

□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 결과

구분	쓰레기통, 하수구 등	약국, 보건소에 반환	보관	가족과 복용
응답건수	524건	76건	343건	6건
비율(%)	55.2%	8.0%	36.1%	0.6%

(자료출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2018년 일반국민 대상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)

□ 「폐기물관리법」

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 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 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-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,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·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16조의2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농약
2. 폐의약품
3.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
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